

「평창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9월 27일, 김성기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10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성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3조 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군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지붕 해체 정의를 취지에 맞게 재정의(안 제2조)
- 2)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, 지원 대상에 기존 ‘주거용 건축물’에서 ‘건축물’로 변경하여 비주택(창고, 축사 등)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

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지붕 해체의 정의를 조례의 취지와 적합하게 수정하고,

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,

비주택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함.

○ 검토결과,

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